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38
----------	------

발의연월일 : 2016. 12. 13.

발의자 : 김진태 · 여상규 · 황영철
염동열 · 박명재 · 이종명
권성동 · 정갑윤 · 성일종
송석준 · 오신환 · 전희경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p>가.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p> <p>나. ~ 라. (생 략)</p> <p>3. (생 략)</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p>가. ----- ----- <u>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u></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